

서울특별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의안 번호	1550
----------	------

2020년 6월 30일
보건복지위원회

I. 심사경과

1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0년 5월 25일 김용연 의원의 11명
2. 회부일자 : 2020년 5월 29일
3. 상정일자 : 제295회 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

【2020년 6월 16일 상정·의결(원안 가결)】

II. 제안설명의 요지 (김용연 의원)

1. 제안이유

- 성별영향평가는 법률에 따라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 대해 성별에 미치는 영향과 성차별 요소 및 발생원인 등을 체계적·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개선함으로써 실질적 성평등 실현을 위한 중요한 정책평가도구임.
- 이에 성별영향평가의 보다 효율적 운영과 효과성 제고를 위해 법률에 위임된 시장의 책무를 조례에 명시하고자 함.

- 또한 성별영향평가의 효율적 실시를 위해 성별영향평가업무를 총괄하는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을 여성가족정책실장으로 명시함으로써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그 책무성을 강화하여 타당성 확보 및 정책적 효과성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시장의 책무를 추가함.(안 제3조제2항 및 제3항 신설)
-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을 여성가족정책실장으로 명시함.(안 제18조제1항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양성평등기본법」, 「성별영향평가법」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참조

다. 기 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 참조

Ⅲ. 검토보고의 요지 (수석전문위원 이문성)

1 조례안의 개요

- 성별영향평가(Gender Impact Assessment)는 정책과정에서 나타나는 성차별적 영향을 제거하고 정책이 양성 평등 관점에서 기획·수행되도록 하기 위하여 여성 및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·평가하는 것을 말함.
- 성별영향평가는 이전까지는 「서울특별시 성평등 조례」를 근거로 시행하던 것을 서울시의 정책 수립 및 시행 과정에서 성차별적 요소를 제거하고 성평등을 구현하는 데 필요한 중요한 수단 중의 하나로 강조되면서, 2019년 7월 18일 별도의 「서울특별시 성별영향평가 조례」를 제정한 바 있음.
- 동 개정조례안은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강화하고,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을 여성가족실장으로 명확히 하여, 성별영향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고 성평등도시 서울을 조성하고자 하려는 것임.

2 주요사항 검토

□ 시장의 책무 강화 (안 제3조)

- 개정안에서는 현행 조례의 시장의 책무 조항을 상위법인 「성별영향평가법」 제3조1)를 반영하여 선언적이거나 성별영향평가의

실효성을 높이고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지원 범위와 역할을 확대하여 규정하려는 것임.

현행	개정안
<p>제3조(시장의 책무) (생략)</p> <p><신설></p> <p><신설></p>	<p>제3조(시장의 책무) ① (현행 제 목 외의 부분과 같음)</p> <p>② 시장은 <u>성별영향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③ 시장은 <u>성별영향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</u></p>

□ **성별영향평가책임관 지정 (안 제18조)**

○ 「성별영향평가법」제14조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업무의 총괄인 성

-
- 1) 「성별영향평가법」제3조(국가 등의 책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을 수립·시행함에 있어 성평등이 확보되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 -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별영향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 <신설 2015. 2. 3., 2018. 3. 27.>
 -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별영향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 <개정 2015. 2. 3., 2018. 3. 27.>

별영향평가책임관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는데, 현행 조례가 “성별영향평가 사무를 총괄하는 소속기관의 장”으로 해당 상위법 조항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그대로 옮겨오다 보니 그 대상이 다소 불명확해진 바, 개정안에서는 여성가족실장으로 그 책임을 구체화하여 명시하려는 것임.

현행	개정안
제18조(성별영향평가책임관의 지정 등) ① 시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<u>성별영향평가 사무를 총괄하는 소속기관의 장</u> 을 성별영향평가책임관으로 지정한다. ② (생략)	제18조(성별영향평가책임관의 지정 등) ① ----- ----- <u>여성가족정책실장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. ② (현행과 같음)

3 종합 의견

- 동 개정안은 시장이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성별영향평가의 실효성을 강화하고, 그 책임을 명확히 하려는 내용으로, 그 입법취지와 필요성이 매우 인정된다 할 것임.

IV. 질의 및 답변요지 : 「생략」

V. 토론요지 : 「없음」

VI. 심사결과 : 원안 가결

VII. 소수의견 요지 : 「없음」

VIII. 기타 필요한 사항 : 「없음」

서울특별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김용연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550
----------	------

발의년월일 : 2020년 5월 25일

발 의 자 : 김용연·이병도·김화숙·

봉양순·이정인·최기찬·

이영실·김혜련·오현정·

김동식·서윤기·김소양 의원(12명)

1. 제안이유

- 성별영향평가는 법률에 따라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 대해 성별에 미치는 영향과 성차별 요소 및 발생원인 등을 체계적·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개선함으로써 실질적 성평등 실현을 위한 중요한 정책 평가도구임.
- 이에 성별영향평가의 보다 효율적 운영과 효과성 제고를 위해 법률에 위임된 시장의 책무를 조례에 명시하고자 함.
- 또한 성별영향평가의 효율적 실시를 위해 성별영향평가업무를 총괄하는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을 여성가족정책실장으로 명시함으로써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그 책무성을 강화하여 타당성 확보 및 정책적 효과성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시장의 책무를 추가함.(안 제3조제2항 및 제3항 신설)

나.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을 여성가족정책실장으로 명시함.(안 제18조제1항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양성평등기본법」, 「성별영향평가법」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참조

다. 기 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 참조

서울특별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시장은 성별영향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③ 시장은 성별영향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18조제1항 중 “성별영향평가 사무를 총괄하는 소속기관의 장”을 “여성가족정책실장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(시장의 책무) (생 략)</p> <p style="margin-left: 20px;"><u><신 설></u></p> <p style="margin-left: 20px;"><u><신 설></u></p> <p>제18조(성별영향평가책임관의 지정 등) ① 시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<u>성별영향평가 사무를 총괄하는 소속기관의 장</u>을 성별영향평가 책임관으로 지정한다.</p> <p>② (생 략)</p>	<p>제3조(시장의 책무) ① (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)</p> <p style="margin-left: 20px;"><u>② 시장은 성별영향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</u></p> <p style="margin-left: 20px;"><u>③ 시장은 성별영향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</u></p> <p>제18조(성별영향평가책임관의 지정 등) ① ----- -- <u>여성가족정책실장</u>----- ----- -----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
서울특별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- 서울특별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제3조(시장의 책무) 제2항과 제3항을 신설하여 시장의 책무를 추가로 규정하고 있으나 선언적·권고적인 내용이므로 기술적으로 비용추계가 어려움
 - 제18조(성별영향평가책임관의 지정 등) 제1항의 개정은 기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며 비용추계의 대상이 아님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2항

3. 미첨부 사유

- 가. 의안이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(제3조제1항제2호)

4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

담 당 관 남승우

정책조사팀장 여차민

주 무 관 채소영

☎ 02-2180-7942

e-mail : liz1998@seoul.go.kr